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2년 3월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2012년 3월 생산은 제조업(0.3%), 서비스업(1.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4.9%), 기계장비(-4.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7.2%), 자동차(8.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3.9%), 부동산임대(-6.3%)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7.9%), 금융보험(2.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2012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동일하고, 투자는 1.0%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1%)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 의복 등 준내구재(0.5%)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포함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6.4%)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류(2.5%)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주거용 건축공사와 일반토목 및 플랜트 등 토목공사의 실적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기타건축, 발전-통신 및 도로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재건축,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은 감소하고 코스피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증가하여 전월과 동일함.

◆ 2012년 1사분기 전산업생산, 소비,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1.9%, 9.0% 증가

○ 광공업은 영상음향통신, 컴퓨터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201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5% 상승(생활물가지수 2.0% 상승)

○ 201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변동이 없고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2%대 상승을 보임.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3월	1/4	3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9.1	3.7	0.3(-3.1)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9.3	4.0	0.3(-3.4)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10.8	3.2	-0.1(3.0)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5.2	0.2	-3.7(-4.5)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17.8	6.7	4.0(-1.3)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1	2.4	1.4(-1.0)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5.5	1.9	0.0(-2.7)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0.2	9.0	1.0(-7.0)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2.6	3.0	2.5(-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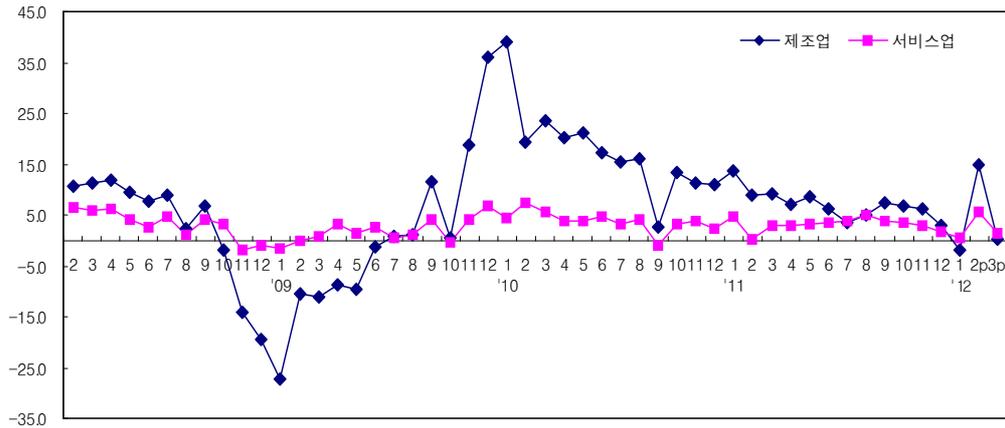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4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3.4%), 기타상품 및 서비스(-4.1%) 부문만 하락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4%), 주택수도 전기·연료(5.2%), 교통(4.8%), 의류 및 신발(4.4%)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2년 4월 생활물가지수는 106.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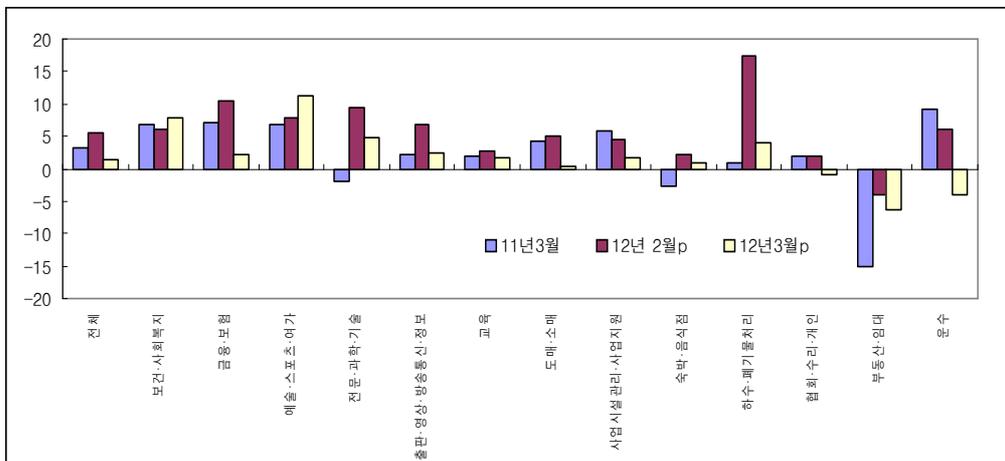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4), 『2012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6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4천 명(1.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945천 명으로 209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08천 명으로 204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2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7%)은 전년동월대비 0.1%p, 여성(50.5%)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4월 중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여성의 고용률은 48.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4월 중 취업자는 24,7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5천 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5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0천 명(2.1%) 증가하였음 (그림 4 참조).
- 2012년 4월 중 실업자는 8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4.4%)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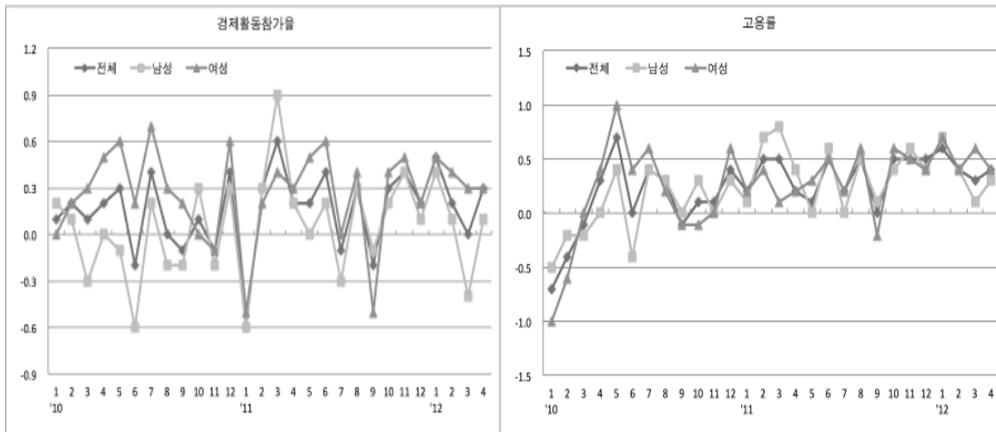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경제활동인구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240 (1.5)	25,269 (1.1)	25,202 (1.6)	24,873 (1.6)	25,210 (1.2)	25,653 (1.6)
참 가 율	60.8	59.9	62.0	61.6	61.5	61.1	60.1	60.9	61.9
취 업 자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303 (1.6)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265 (1.8)	24,758 (1.9)
고 용 률	58.9	57.4	59.9	59.3	59.5	59.4	57.8	58.6	59.7
실 업 자	808	1,028	865	936	786	740	947	945	895
실 업 률	3.3	4.2	3.4	3.7	3.1	2.9	3.8	3.7	3.5
비경제활동인구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713 (0.5)	15,847 (1.2)	16,014 (0.3)	16,495 (0.6)	16,205 (1.3)	15,805 (0.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2.5), 『2012년 4월 고용동향』.

- 남성 실업자는 5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 명(-6.1%) 감소, 여성 실업자는 3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1.6%) 감소
- 실업률은 남성이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성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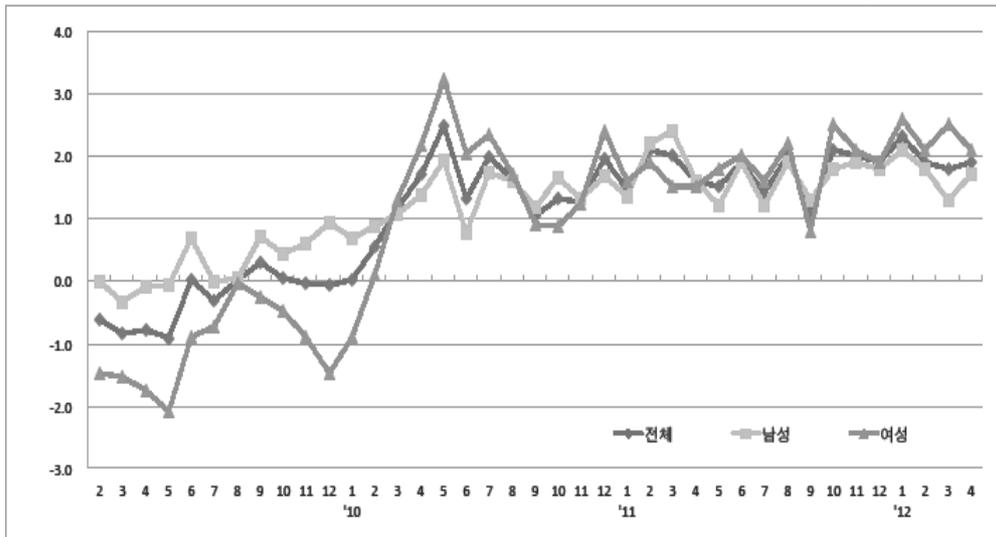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0.6%)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 명(0.5%)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6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 명(-4.1%) 감소,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11천 명으로 82천 명(-1.9%)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2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1천 명, 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천 명, 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4천 명, 2.5%), 건설업(53천 명, 3.0%)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80천 명, -2.0%), 농림어업(-29천 명, -1.8%)에서는 감소
 - 2010년 이래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4월
전 산업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303 (1.6)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265 (1.8)	24,758 (1.9)
농림어업	1,544 (-2.2)	1,207 (-2.3)	1,736 (0.2)	1,642 (0.8)	1,704 (-2.9)	1,521 (-1.5)	1,176 (-2.6)	1,363 (-6.3)	1,613 (-1.8)
제조업	4,131 (7.0)	4,139 (5.8)	4,127 (2.8)	4,108 (2.9)	4,041 (-0.3)	4,056 (-1.8)	4,037 (-2.5)	4,018 (-2.5)	4,027 (-2.0)
건설업	1,761 (3.3)	1,641 (-0.2)	1,774 (-2.3)	1,735 (-3.2)	1,755 (-2.0)	1,832 (4.0)	1,721 (4.8)	1,744 (4.4)	1,787 (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42 (-1.3)	5,471 (-1.1)	5,457 (-0.1)	5,448 (0.2)	5,496 (1.0)	5,542 (1.8)	5,571 (1.8)	5,532 (1.5)	5,582 (2.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234 (1.0)	8,097 (3.0)	8,529 (2.8)	8,438 (2.7)	8,473 (2.8)	8,486 (3.1)	8,398 (3.7)	8,572 (4.1)	8,748 (3.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55 (1.9)	2,880 (1.6)	2,933 (3.6)	2,916 (2.7)	3,001 (6.6)	3,011 (5.5)	3,011 (4.5)	3,022 (4.8)	2,986 (2.4)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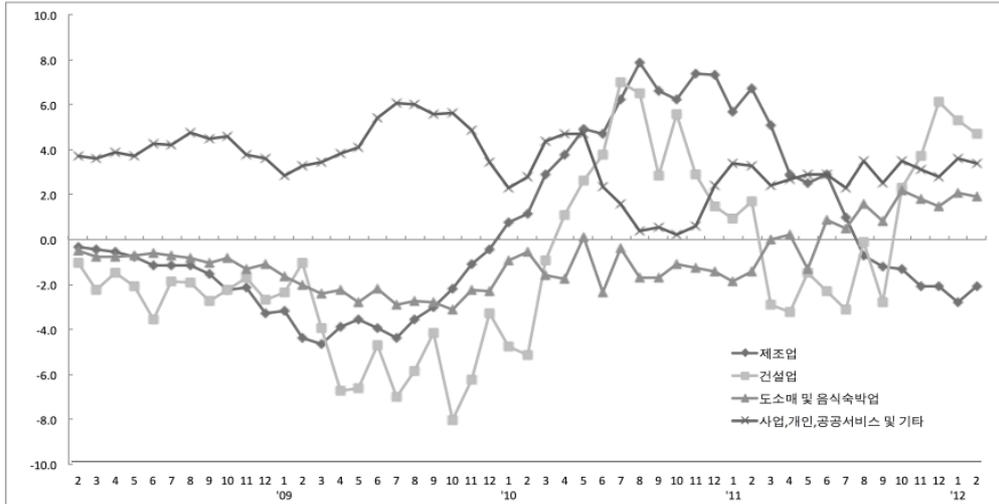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2.5), 「2012년 4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증가 추세 지속

- 2012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3천 명(1.9%)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2천 명(1.9%)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957천 명으로 339천 명(3.2%)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95천 명으로 167천 명(3.4%)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27천 명으로 185천 명(-10.2%)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폭은 2012년 들어 다소 둔화(그림 6 좌측 참조)
 - 2011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자영업자는 양(+)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2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 명(3.6%)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096천 명으로 321천 명(1.5%)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89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7.0%) 감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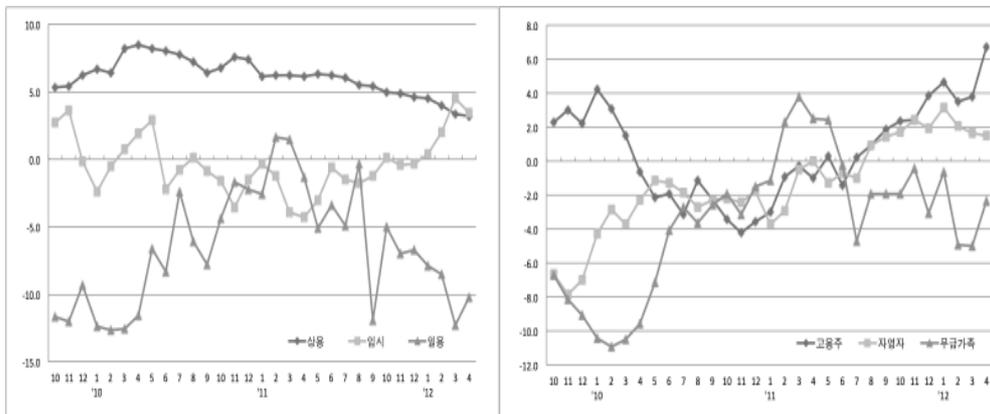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전 체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303 (1.6)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265 (1.8)	24,758 (1.9)
비임금근로자	6,778 (-2.5)	6,542 (-1.5)	7,004 (-0.3)	6,946 (0.2)	6,965 (-0.4)	6,878 (1.5)	6,650 (1.6)	6,844 (0.9)	7,079 (1.9)
자영업주	5,514 (-2.6)	5,399 (-2.1)	5,657 (-0.7)	5,642 (-0.3)	5,680 (0.6)	5,639 (2.3)	5,548 (2.8)	5,678 (2.2)	5,805 (2.9)
무급가족종사자	1,264 (-2.2)	1,143 (1.7)	1,348 (1.5)	1,304 (2.5)	1,285 (-4.7)	1,239 (-2.0)	1,102 (-3.6)	1,166 (-5.0)	1,274 (-2.3)
임금근로자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357 (2.1)	17,518 (2.3)	17,585 (2.2)	17,277 (2.1)	17,421 (2.1)	17,679 (1.9)
상용근로자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618 (6.1)	10,731 (5.6)	10,820 (4.8)	10,825 (4.0)	10,899 (3.4)	10,957 (3.2)
임시근로자	5,052 (-2.2)	4,804 (-1.8)	5,041 (-2.7)	4,928 (-4.3)	5,072 (-1.5)	5,042 (-0.2)	4,914 (2.3)	4,997 (4.5)	5,095 (3.4)
일용근로자	1,838 (-2.8)	1,701 (0.1)	1,846 (-3.3)	1,812 (-1.3)	1,716 (-5.7)	1,723 (-6.3)	1,538 (-9.6)	1,525 (-12.3)	1,627 (-10.2)
36시간 미만	3,090 (4.4)	3,246 (-33.1)	3,210 (0.4)	3,251 (-1.3)	8,464 (154.2)	3,217 (4.1)	3,313 (2.1)	3,332 (3.0)	3,367 (3.6)
36시간 이상	20,620 (1.1)	19,739 (11.7)	21,067 (1.7)	20,775 (1.9)	15,419 (-24.3)	20,937 (1.5)	20,081 (1.7)	20,611 (1.4)	21,096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2.5), 『2012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월대비 증줄 실업률 증가, 나머지 학력은 감소

- 2012년 4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8.5%, -0.2%p), 30대(3.3%, -0.6%p), 40대(2.1%, -0.2%p), 60세 이상(2.3%, -0.1%p)에서 감소
 - 50대(2.3%, 0.2%p)는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증줄 이하(2.5%, 0.3%p)에서는 증가하였고, 고졸(3.7%, -0.6%p), 대졸 이상(3.8%, -0.1%p)에서는 감소하였음.
- 2012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89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46천 명으로 44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월		3월	4월	
전 체	808(3.3)	1,028(4.2)	865(3.4)	936(3.7)	786(3.1)	740(2.9)	947(3.8)	945(3.7)	895(3.5)	
연령	15~29세	297(7.1)	372(8.8)	332(7.9)	366(8.7)	284(6.7)	292(7.1)	346(8.2)	347(8.3)	357(8.5)
	30~39세	194(3.2)	237(4.0)	211(3.5)	237(3.9)	189(3.2)	171(2.9)	190(3.2)	202(3.4)	199(3.3)
	40~49세	151(2.2)	167(2.5)	145(2.1)	154(2.3)	138(2.0)	131(1.9)	164(2.4)	161(2.4)	141(2.1)
	50~59세	114(2.3)	133(2.7)	107(2.0)	108(2.1)	108(2.1)	94(1.8)	124(2.3)	134(2.5)	125(2.3)
	60세 이상	53(1.9)	119(4.5)	70(2.3)	71(2.4)	67(2.1)	53(1.8)	124(4.4)	101(3.4)	74(2.3)
교육 수준	증줄 이하	112(2.2)	195(4.1)	112(2.1)	114(2.2)	119(2.3)	108(2.1)	187(4.0)	159(3.3)	127(2.5)
	고졸	392(3.9)	465(4.6)	408(4.0)	436(4.3)	372(3.7)	349(3.5)	408(4.1)	407(4.1)	370(3.7)
	대졸 이상	304(3.1)	369(3.8)	345(3.4)	387(3.9)	296(2.9)	284(2.8)	352(3.4)	379(3.6)	398(3.8)
취업 경험	취업무경험 실업자	38	52	45	47	45	44	58	55	50
	취업유경험 실업자	770	977	820	890	741	696	889	890	846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5), 『2012년 4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2년 2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2012년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4천 원으로 전년(2,768천 원)대비 4.2%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해 2,42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하여 172천 원을 기록한 반면, 특별급여 증가율은 4.2% 하락하여 442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정액급여, 초과급여의 상승에 힘입어 2011년 2월 대비 4.1% 상승한 3,036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한 1,29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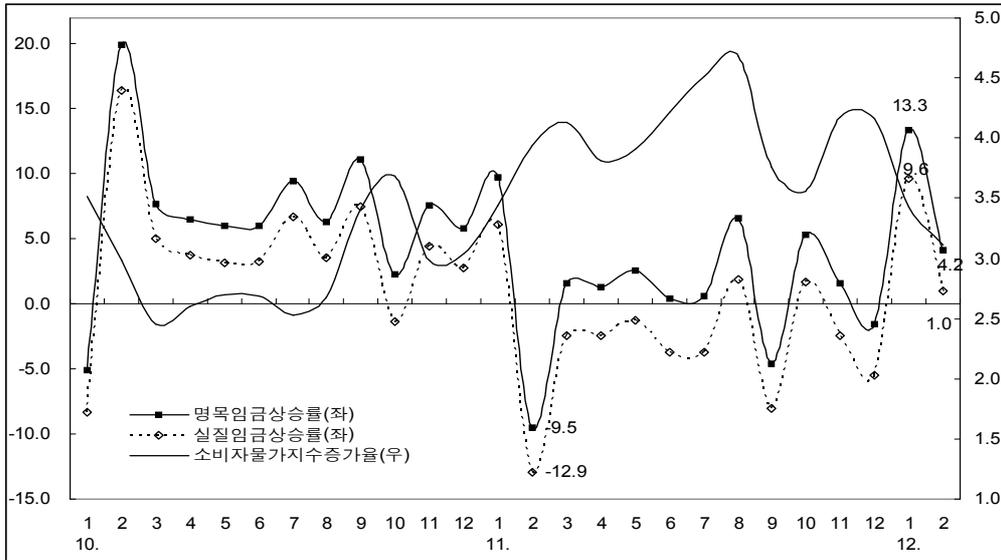
(단위: 천 원, 2010=100.0, %)

	2009	2010	2011	2012			
				2월	1월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768 (-9.5)	3,390 (13.3)	2,884 (4.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16 (-11.5)	3,579 (13.2)	3,036 (4.1)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293 (4.6)	2,456 (6.4)	2,422 (5.7)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62 (-8.9)	167 (1.6)	172 (5.8)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62 (-50.1)	957 (38.8)	442 (-4.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43 (9.2)	1,341 (15.4)	1,293 (13.1)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2.9 (3.9)	105.7 (3.4)	106.1 (3.1)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12.9	9.6	1.0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실질임금은 1.0% 증가함.

- 2012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0%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도매 및 소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2년 2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9.3%), 운수업(7.9%), 숙박 및 음식점업(6.6%)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반면, 여가관련 서비스업(-5.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2%) 등에서 임금이 하락함.
- 주로 특별급여가 상승한 데 기인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09	2010	2011	2012	
				2월	2월
전 산업	2,636 (2.6)	2,816 (6.8)	2,844 (1.0)	2,768 (-9.5)	2,884 (4.2)
광업	2,797 (-4.0)	3,000 (7.3)	3,309 (10.3)	2,828 (-2.0)	2,966 (4.9)
제조업	2,737 (2.2)	2,985 (9.1)	3,034 (1.6)	2,905 (-11.2)	2,999 (3.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097 (-0.6)	5,455 (7.0)	5,482 (0.5)	4,690 (-2.9)	4,633 (-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321 (6.3)	2,441 (5.2)	2,488 (1.9)	2,364 (-7.9)	2,444 (3.4)
건설업	1,801 (-3.1)	1,944 (7.9)	2,181 (12.2)	2,137 (-0.4)	2,271 (6.3)
도매 및 소매업	2,586 (6.1)	2,769 (7.1)	2,942 (6.3)	2,707 (-11.0)	3,036 (12.2)
운수업	2,259 (8.8)	2,381 (5.4)	2,393 (0.5)	2,317 (-9.1)	2,499 (7.9)
숙박 및 음식점업	1,392 (0.3)	1,462 (5.0)	1,653 (13.0)	1,583 (5.7)	1,682 (6.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232 (0.7)	3,385 (4.7)	3,692 (9.1)	3,641 (-4.0)	3,810 (4.6)
금융 및 보험업	4,472 (0.9)	4,680 (4.7)	4,771 (1.9)	4,828 (-10.5)	4,892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85 (2.9)	1,965 (4.3)	2,017 (2.6)	1,954 (-4.2)	2,137 (9.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03 (7.3)	3,957 (6.9)	3,870 (-2.2)	3,783 (-8.0)	3,942 (4.2)
사업서비스업	1,708 (0.6)	1,848 (8.2)	1,700 (-8.0)	1,671 (-15.1)	1,767 (5.7)
교육서비스업	3,112 (0.4)	3,157 (1.4)	2,985 (-5.4)	3,139 (-12.3)	3,145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33 (3.9)	2,594 (2.4)	2,490 (-4.0)	2,452 (-7.6)	2,558 (4.3)
여가관련서비스업	2,088 (5.6)	2,107 (0.9)	2,130 (1.1)	2,111 (-5.1)	2,001 (-5.2)
협화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21 (4.5)	2,102 (4.0)	2,185 (3.9)	2,184 (-3.8)	2,167 (-0.8)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5~299인 사업체 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2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서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2012년 2월 기준 2,711천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각각 5.8%, 5.5% 증가한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2월 상용임금총액은 4,189천 원으로 2011년 2월 대비 0.2% 하락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총액의 하락은 특별급여의 감소에 기인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09	2010	2011		2012
				2월	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16 (-11.5)	3,036 (4.1)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293 (4.6)	2,422 (5.7)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62 (-8.9)	172 (5.8)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62 (-50.1)	442 (-4.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557 (2.6)	2,699 (5.5)	2,675 (-0.9)	2,581 (-10.2)	2,711 (5.0)
	정액급여	1,995 (3.6)	2,082 (4.3)	2,204 (5.9)	2,158 (5.5)	2,285 (5.8)
	초과급여	155 (1.2)	176 (13.6)	150 (-14.5)	138 (-13.9)	145 (5.5)
	특별급여	407 (-1.4)	441 (8.4)	321 (-27.3)	285 (-57.3)	281 (-1.2)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934 (0.3)	4,291 (9.1)	4,273 (-0.4)	4,196 (-12.5)	4,189 (-0.2)
	정액급여	2,642 (4.4)	2,779 (5.2)	2,842 (2.3)	2,804 (3.4)	2,911 (3.8)
	초과급여	244 (-10.1)	268 (9.6)	286 (6.7)	256 (5.3)	266 (3.7)
	특별급여	1,049 (-6.3)	1,245 (18.7)	1,146 (-8.0)	1,136 (-38.3)	1,013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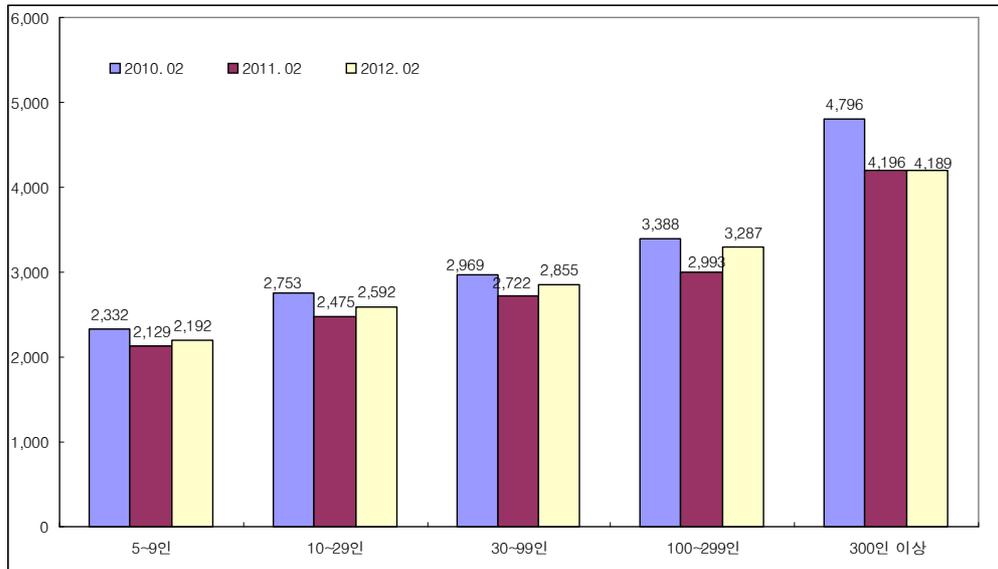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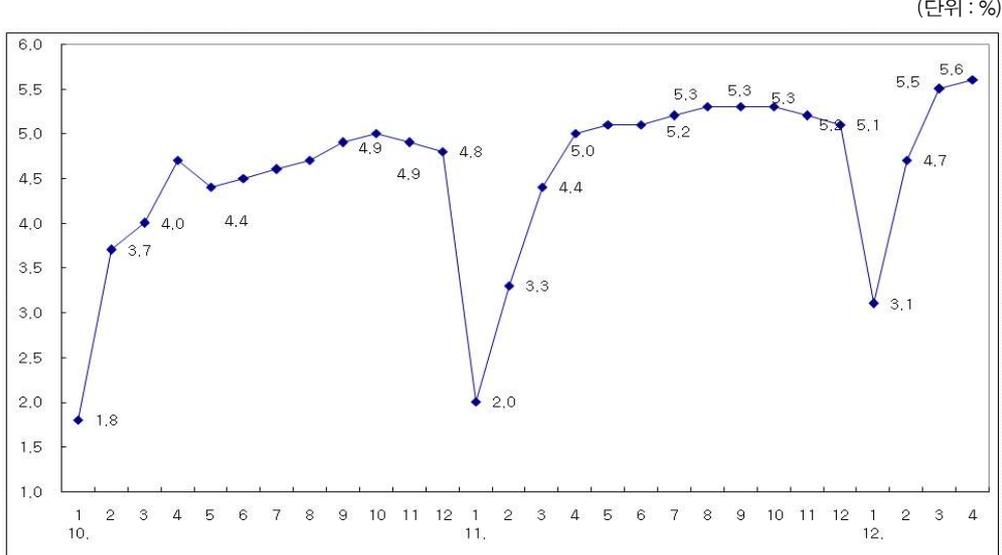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 5.6%

○ 2012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5.6%를 기록함.

- 2012년 4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6%로 2011년 4월 인상률(5.0%)에 비해 0.6%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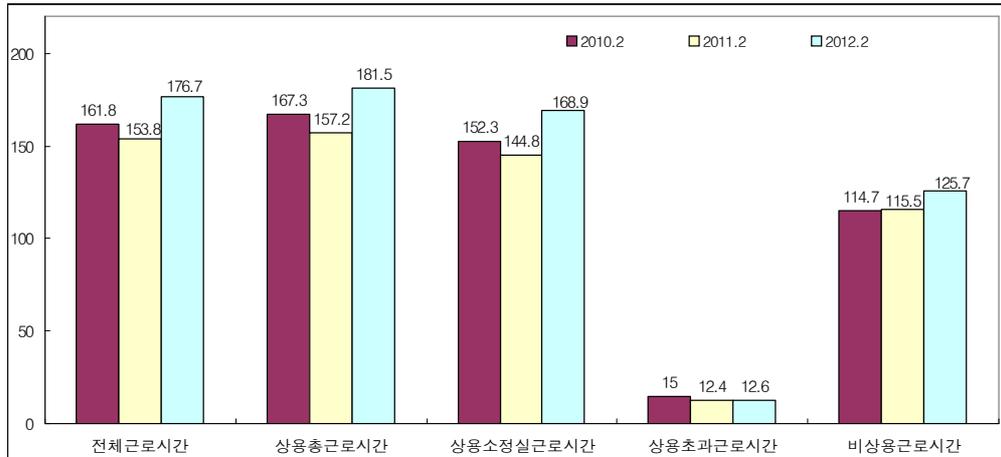
◆ 2012년 2월 근로시간, 14.9% 증가

○ 2012년 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함.

- 2012년 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153.8시간)에 비해 22.9시간(14.9%) 증가함.
- 근로시간의 급격한 증가는 2011년 2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4일 많은 데 기인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5시간으로 전년동월(157.2시간)대비 15.5% 증가, 초과근로시간은 12.6시간으로 전년동월(12.4시간)대비 1.6% 증가하였고, 소정실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동월(144.8시간)대비 16.6% 증가함(그림 10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5.7시간으로 전년동월(115.5시간)대비 10.2시간(8.8%)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09	2010	2011	2012	
				2월	2월
전 산업	176.1(-0.3)	176.7(0.3)	176.3(-0.2)	153.8(-4.9)	176.7(14.9)
광업	187.6(4.0)	188.1(0.3)	186.9(-0.6)	159.0(-6.0)	186.3(17.2)
제조업	188.5(-0.8)	192.1(1.9)	190.6(-0.8)	165.4(-4.5)	188.9(14.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0.6)	177.1(0.1)	158.3(-3.5)	178.2(12.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0.3)	192.9(-0.6)	186.2(-3.5)	161.1(-8.5)	184.7(14.6)
건설업	147.2(-5.5)	146.1(-0.7)	153.9(5.3)	138.7(1.4)	153.9(11.0)
도매 및 소매업	179.0(0.2)	177.2(-1.0)	175.1(-1.2)	151.2(-5.6)	175.6(16.1)
운수업	184.4(8.0)	184.6(0.1)	181.6(-1.6)	162.0(-6.1)	181.4(12.0)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86.2(13.7)	168.5(11.0)	190.0(12.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	166.8(0.4)	166.2(-0.4)	164.5(-1.0)	139.1(-8.8)	165.0(18.6)
금융 및 보험업	166.8(0.5)	165.3(-0.9)	163.6(-1.0)	135.8(-10.7)	166.3(2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4.2(-3.1)	174.3(-5.6)	196.7(12.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0.8)	166.2(-0.1)	140.1(-8.2)	167.3(19.4)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0.6)	172.1(-4.4)	148.3(-10.4)	175.1(18.1)
교육서비스업	153.7(1.9)	149.9(-2.5)	152.9(2.0)	133.0(-4.9)	157.2(1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0.2)	176.5(0.1)	173.5(-1.7)	151.5(-6.0)	175.2(15.6)
여가관련서비스업	161.6(1.6)	158.7(-1.8)	157.1(-1.0)	139.8(-4.3)	157.1(12.4)
협화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3.6(-0.2)	154.6(-3.9)	169.1(9.4)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2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166.3시간, 2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7.3시간, 19.4%), 교육서비스업(157.2시간, 18.2%) 등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6.7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3.9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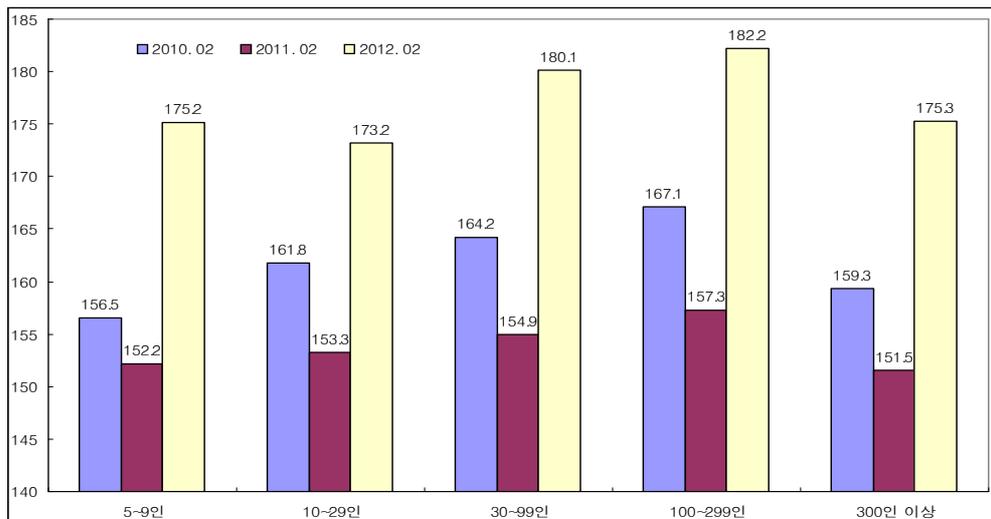
◆ 전 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2년 2월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2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2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8.2%), 사업소득(2.6%), 이전소득(12.1%)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실질로는 3.8%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7.4%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2.5%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교육비 지출이 0.2%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비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2%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11.5%), 연금(8.5%), 사회보험(9.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한 이자비용 지출이 18.3% 증가하였음.
 - 1/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표 10〉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1년				2011년	
	1/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 득	3,857.6	3.5	3,883.4	7.3	4,123.5	6.9
경상소득	3,675.8	4.5	3,769.6	7.7	3,946.3	7.4
근로소득	2,486.2	5.3	2,533.3	7.7	2,691.0	8.2
사업소득	812.5	2.4	869.0	6.2	833.9	2.6
재산소득	18.6	13.7	15.4	0.0	19.3	3.7
이전소득	358.5	3.3	351.9	12.1	402.0	12.1
비경상소득	181.8	-14.0	113.8	-6.5	177.3	-2.5
소비지출	2,439.4	4.3	2,379.6	3.1	2,568.3	5.3
비소비지출	736.6	6.1	703.3	7.5	790.3	7.3
처분가능소득	3,121.1	2.9	3,180.1	7.2	3,333.2	6.8
흑자액	681.7	-1.9	800.5	21.7	765.0	12.2
흑자율	21.8	-1.1p	25.2	3.0p	23.0	1.1p
평균소비성향	78.2	1.1p	74.8	-3.0p	77.0	-1.1p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 통계청(2012.5), 『2012년 1/4분기 가계동향』.

- 2012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분위~4분위의 소득증가율(8.1~9.3%)이 5분위의 소득증가율(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높은 증가세(7.3~11.1%)를 보였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 증가율(9.3%)이 5분위 증가율(3.9%)을 상회함.

<표 11> 2012년 1/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가구원 수	256명		314명		338명		360명		368명	
가구주 연령	57.7세		48.1세		46.3세		45.7세		47.1세	
소득	1,209.2	9.3	2,617.8	8.6	3,664.3	8.7	4,937.0	8.1	8,184.2	4.5
경상소득	1,115.6	7.8	2,516.3	8.1	3,555.9	8.9	4,781.9	7.8	7,757.0	6.0
근로소득	513.0	11.1	1,533.0	10.4	2,248.9	7.3	3,317.6	8.8	5,838.9	7.5
비경상소득	93.7	31.0	101.5	23.3	108.4	3.0	155.1	16.0	427.2	-17.2
가계지출	1,562.1	5.1	2,456.5	3.1	3,119.4	6.3	3,915.6	6.1	5,736.2	6.6
소비지출	1,300.0	4.3	2,000.5	2.3	2,478.5	6.6	2,978.3	5.1	4,082.2	6.4
비소비지출	262.1	9.2	456.0	6.6	640.9	5.1	937.3	9.2	1,654.0	6.9
처분가능소득	947.1	9.3	2,161.9	9.1	3,023.5	9.5	3,999.7	7.8	6,530.2	3.9
흑자액	-352.9	7.1	161.4	497.0	544.9	24.9	1,021.5	16.6	2,448.0	0.0
흑자율	-37.3	6.6p	7.5	6.1p	18.0	2.2p	25.5	1.9p	37.5	-1.5p
평균소비성향	137.3	-6.6p	92.5	-6.1p	82.0	-2.2p	74.5	-1.9p	62.5	1.5p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2년 5월 16일 기준)는 168,423일로 집계됨.

〈표 12〉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개소, %)

	2012. 1. 1~5. 22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23	13	
종 결	15	8	
진 행	8 (5)	5 (7)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168,423	129,575	▲ 30.3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5월 16일 기준임.

부분파업으로 인해 일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MBC

-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5월 현재까지 파업을 계속 중임. 5월 7일부터 텐트농성에 돌입함. 한편 사측은 5월 2일부터 계약직 채용 면접을 예정하였음(이미 4월 17일 사측은 취재기자 등 계약직 30명 채용 공고를 내고 4월 30일자로 계약직 취재기자 20명에 대해 채용면접을 실시한 바 있음).
- 5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징계처분을 받은 PD수첩 제작진 4명에 대한 징계무효확 인소송에 대한 제1차 공판을 진행함(정직 3월·감봉 6월 등).
- 5월 4일, 방송사 공동파업 시민문화제를 개최함. 이날 사측은 보도국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19명(1년 계약직)을 채용함.
- 5월 8일, 노조는 ‘파업 100일 기념식’을 개최함. 한편 5월 7일, 2명의 아나운서가 종교적 이유로 노조 탈퇴 후 업무복귀함.
- 5월 8일, 송출부문(필수인력) 15명이 파업에 참여함. 그러나 스포츠PD 3명이 올림 픽 중계 이유로 업무복귀함. 한편 이날은 사측이 3주체 참여(노·사·시청자대표) ‘공정방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노조에 제안함. 이에 노조는 단협상 공정방송협 의회를 사측이 무력화한 바 있어, 사측의 제안을 거부함.
- 5월 16일, 기자총회가 개최되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함. 5월 18일, 노조는 ‘5월 17일자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함.
- 5월 18일, 영등포경찰서는 노조 집행부 5명(정영하 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 용 사무처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서울남부지법은 5명 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함. 5월 21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법원은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

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전원 기각함.

■ KBS

-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5월 현재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5월 2일, 새노조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언론사 총파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청문회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같은 날 KBS노조(1노조)는 ‘방송법 개정 촉구 전국 조합원총회 및 총파업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 주요내용으로는 5월 3일, 전국 조합원총회를 시작으로, 4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정함.
- 5월 3일, KBS노조는 ‘방송독립 쟁취를 위한 전국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5월 4일 00:00부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1) 파업인원은 170여 명 정도로 본사 40여 명, 지역 130여 명이 파업에 참가 중임.
- 5월 9일, KBS노조는 언론노조 KBS계약직 지부와 통합출범식을 가짐. 이미 4월 27일경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직변경을 결정한 바 있음.
- 5월 16일, KBS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잠정중단하기로 하되, 5월 17일 00:00부로 업무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림.2)
- 5월 17일, KBS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함. 5월 18일, KBS노조는 농성 천막을 설치하여 비대위 조합원 50여 명이 매일 2명씩 교대로 대기하고 있음.

■ YTN

- 지난 4월 노사는 실무교섭을 통해 임금교섭안에 대한 서로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임금교섭 노<사> 쟁점】**
- <노> 기본급 11% → 10% → 9%
- <사> 2% → 4% → 4.5%
- 5월 2일, 노사는 실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고수로 진전 없이 종료함.
- 5월 7일, 사측은 조합원 2명에게 징계(정직 2월, 경고) 통보함. 징계사유는 회사 윤리강령 및 품위유지 위반(3월 8일·16일, 노조 집회시 사장에 대한 욕설 발언 <정직 2월>, 4월 3일 사장실 앞 농성시 상무이사에게 욕설<경고>) 등임.
- 5월 9일, 조합원 50여 명은 본관 로비 및 사장실 앞에서 ‘부당징계 규탄 및 인사위

1) 방송법 제46조 및 제50조: KBS 이사회(11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대통령 임명(임기 '12.8월), 사장: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임기 '12.11월) → 노조, KBS 이사회(12명)를 국회 6명(여야 각 3명), 시도지사협의회 6명 추천, 사장 선임시 2/3 특별다수제 요구

2) 방송법 개정 촉구 총파업 잠정 중단, 5.17 00:00부로 전 조합원 업무 복귀, 5.17부터 별도의 지침 내릴 때까지 비대위 중심 투쟁으로 전환

원회 해체요구' 집회를 개최함.

- 5월 14일, 노조는 8차 파업에 돌입함.

【파업현황】

▲ 1차(3. 8, 3. 9) ▲ 2차(3. 16) ▲ 3차(3. 23) ▲ 4차(3. 29, 3. 30, 4. 2, 4. 3) ▲ 5차(4. 6) ▲ 6차(4. 13, 4. 16) ▲ 7차(4. 20) ▲ 8차(5. 14, 5. 15, 5. 16, 5. 17, 5. 18)

- 5월 18일, 사측은 노조집행부 3명(김종욱 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 송추진위 간사)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 및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보함(사유: 불법파업·무단점거 주도, 명예훼손 등).

■ 국민일보

- 5월 현재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2월 23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임. 5월 14일, 노사는 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사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 다만 조민제 전 사장이 조합원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고소 건에 대해서도 취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조민제 전 사장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님을 주장함.

- 5월 16일, 노사는 임금소위원회를 개최함(4월 25일 노사는 임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함). 지난 4월 30일, 노조는 사측에 노사화합방안을 제기한 바 있음. 주요 내용은 ① 양측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② 이번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 금지, ③ 파업종료 후 노조대표는 사측에 유감 표명, ④ 장기파업에 대한 대국민 공동사과문 발표 등임. 그러나 사측은 ①, ②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5월 16일, 노사는 임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인상률을 6.5%에서 5%로 수정제시함(사측은 4%).

- 5월 22일, 노사는 잠정합의에 이르러 5월 23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잠정합의내용】

▲ 노사 쌍방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쟁대위 20여 명 관련 및 조희장 개인 고소 사건 제외) ▲ 일반 조합원 징계 금지(쟁대위 20여 명 제외) ▲ 임금 4.5% 인상(무노동·무임금 준수)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분회

- 노조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지부장은 3월 15일부터 망루에서 단식농성을 해왔으나, 건강악화로 단식농성을 중단함. 5월 2일,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이 찾아와 남상훈 지부장의 단식농성 해제와 입원을 권유하였음.

- 5월 21일, 노조는 사측에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함. 기

본합의서의 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신분보장, 자동차노련 협약 준용 등으로 알려짐.

○ 주요 분류사업장 등

■ 전주시내버스 5개사(공공운수노조 5개 분회)

- 5월 1일, 노조는 근무일수 단축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3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이에 사측 5개사는 3월 20일부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노사간 교섭은 4월 2일 이후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노<사> 주요쟁점】

▲월 근무일수 단축(24일→22일) <불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불가(현행: 의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로 구성<총 7명: 의장 1, 노 3, 사 3>)> ▲무사고수당·근속수당·승무수당·CCTV수당·하계휴가비 인상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 임협에 따름>

- 5월 3일, 5개사 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위원장(김춘진 의원) 면담을 요청하며 5월 2일부터 대기 중임. 이날 호남고속과 제일여객은 개별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공동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이 무산되었고, 4일에도 신성여객이 개별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불참으로 교섭이 무산되었음.
- 5월 7일, 전북교통단체연합회는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와 전북조합원은 무법존재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에 노조는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4명이 면담을 진행함. 이날 호남고속 사측은 전북지역자동차노조(한국노총)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함.
- 5월 13일,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음.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간부 찬반투표를 가결한 바 있음(68%, 투표 41명, 찬성 28명, 반대 12명). 5월 15일, 5개사 사장단은 김성주 당선자와 면담을 실시함. 사측은 잠정합의안 수정을 요구하였고, 김성주 당선자는 잠정합의안 원안대로 합의를 권고함. 이에 노조는 예정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취소함.

【잠정합의안】

▲노조, 조건 없는 업무복귀 ▲사측, 업무복귀의사를 밝히면 즉시배차 ▲배차 및 근무일수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 금지 ▲노사, 평화기간 설정(일체의 쟁의행위 중단) 및 성실 교섭

【주요수정내용】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 → 시내버스 5개사 ▲업무복귀의사를 밝히면 →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는 자 ▲배차 및 근무일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 배차 및 근무일수에서 불이익을(“등에서” 삭제)

■ 유성기업

- 유성기업은 지난 4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1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5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3차 징계자 101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회의를 개최함.
- 5월 17일, 노사(2노조)는 2012년 임단협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2차).

【주요 요구안】

▲일급 3,700원·생산장려수당 10,000원·호봉수당 일평균 325원 인상 ▲정년 59세 → 61세

- 한편 5월 18일 노사(1노조)는 2011년 임금교섭을 예정함(17차).

【노<사> 쟁점】

기본급 150,611원(일급 5,020원) 정액 인상 <일급 1,500원 인상>

- 5월 17일, 노사(2노조)는 2차 임단협 교섭을 개최하여 선 단협·후 임금 논의를 하기로 함.
- 5월 18일, 1노조는 부분과업에 돌입함(아산지회 3시간, 영동지회 4시간).

■ 케이투코리아

- 케이투코리아는 서울 소재 등산용품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노조는 민주노총 화성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음. 지난 5월 15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리해고 철회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 기본급 20만 원 인상, 직무수당 기본급화,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사무실 인정, 근로시간면제시간 2,000시간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함.
- 노조는 사측에 5월 16일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근로자 개별면담 일정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3)
- 케이투코리아의 노사분규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음. 사측은 2011년부터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함.4) 2012년 3월, 사측은 생산직 근로자 전

3) 사측은 5월 11일자로 사내게시판에 ‘배치전환을 위한 개별면담 실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배치전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함. 주요내용으로는 ▲전환배치를 통한 생산부 전원 고용보장 ▲개인별 면담일시 및 장소 ▲희망부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인원 과다시 개인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배치 부서 결정 ▲재배치 부서 결정 후 해당부서로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본인 희망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명예퇴직 가능(1년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임.

4) 국내(개성공단: '11.4월부터 가동 중)와 국외(인도네시아: '12.2월 준공)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고 '12.6월부터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에 따라 생산부서 폐지 예정

원(93명)에 명예퇴직 신청 안내 후 정리하고 실시 공고를 냈. 사측은 명예퇴직 신청 3월말까지, 12개월 통상임금 지급, 5월말 정리하고 실시 등을 조건으로 제안했으나 노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용유지 보장을 요구함. 3월 14일, 생산직 근로자 93명이 민주노총 화성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함.

- 3월 15일, 정리하고 철회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사측은 인력 배치전환 계획안을 제시한 상황임. 그러나 노조는 배치전환안의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기본급 20% 인상, 직무수당 기본급화, 노조사무실 및 게시판 설치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사용자는 5월 31일부로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하되, 해당근로자 93명은 인력재배치를 통해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5월 22일, 사측은 전환배치(안) 등을 공고함. 6월 1일자 생산부 폐지에 따른 전환배치(총 77명)와 관련하여 개별면담 시한을 5월 25일까지 연장하며, 개별면담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안대로 시행할 예정임.

■ 서희산업

- 서희산업은 충북 음성 소재의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이며, 비알코리아의 사내하청업체임. 노조는 한국노총 화학노련에 가입되어 있음.
- 5월 8일, 노조는 전 조합원을 원청(비알코리아) 소속으로 전환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음. 쟁의행위 당일, 사측은 직장폐쇄를 실시함. 이에 원청인 비알코리아는 서희산업 정문 앞이 원청 사유지임을 이유로 노조에 접근 금지 요청함.
- 5월 10일, 사측은 파업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복귀요청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임. 앞서 5월 8일, 노사와 비알코리아는 원청 소속전환을 두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입장차가 커서 협의가 결렬되었고, 한국노총 충청음성지역 지부 의장이 사측대표와 원청 부사장 간 협의를 통해 “1년 이내 조합원 전원을 비알코리아 소속으로 전환 추진”이라는 절충안을 노조에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함.

【노<사> 주요쟁점】

1개월 이내 조합원 전원을 비알코리아(원청)로 소속 전환 요구 <5년 후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전환 추진>

- 5월 10일, 사측은 파업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복귀 명령서를 발송하고, 근로자 4명(업무과실, 욕설 등)에 대해 시말서 제출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함. 16일, 사측은 파업 대체근로자 채용면접을 계속 중에 있음. 5월 9일~5월 15일까지 31명을 채용함(기간제 19명, 일용직 12명).
- 5월 17일, 사측은 2차 근무복귀 명령서를 발송함(5.21 08:00까지 미복귀시 징계처분). 한편 비알코리아 측은 노조에 접근 금지 5차 퇴거요청 문서를 발송한 상태임.

■ KEC

- 5월 3일, 사측은 지회장 등 5명에 대해 ‘정보통신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월 10일에는 특별교섭위원 구성 등을 위해 금속노조 본조와 지회의 간담회가 예정되었으나 지회의 입장변경으로 취소됨. 사측은 특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은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지회는 간담회를 통해 교섭권한 일체를 본조로부터 위임받고자 하였으나, 본조가 이를 거부하자 간담회를 포기함.
- 5월 11일, 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상경하여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 개최
-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KEC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답가처분 결정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판결의 취지는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판단한 것임. 향후 대법원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5월 22일, 사측은 단체교섭응답가처분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1노조를 더 이상 교섭상대로 인정할 수 없고, 2노조만을 교섭상대로 인정하여 향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 사측은 향후 2노조와 잠정합의한 단협을 1노조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및 단체교섭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강구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 연합뉴스

- 3월 21일, 박정찬 사장은 노조에 ‘노사참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거취문제를 포함하여 2개월간 논의 후 합의도출이 안 될 시 1개월 내에 사원 불신임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지난 4월 24일, 실국장급 간부들은 사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실국장급 간부들이 제시한 중재안(4.10)에 대한 사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함.⁵⁾
- 5월 4일, 노조는 전 사원(임원 제외, 실국장급 포함) 대상으로 ‘박정찬 사장의 사장직 수행 찬성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함. 한편 사측은 법원에 ‘쟁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5월 9일, ‘박정찬 사장의 사장직 수행 찬성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여론조사 결과는 816명 중 617명이 참여(75.61%)하여, 찬성 6.16%(38명), 반대

5) 중재안: ▲사장 거취 투표는 파업 푸는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늦어도 6월말 이내), 정족수는 재적 과반으로 함 ▲(가칭)제도개선특위를 노사 공동으로 구성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사장거취 투표와 관계없이 시행 ▲중재안 수용과 동시에 파업을 풀고 현업 복귀

93.84%(579명)로 집계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관련 재처분 결정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자동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처분 결정을 내림.
- 5월 3일, 현대차 지부는 4월 25일 원하청연대회의에서 결정한 특별교섭요구안 등의 확정을 위한 확대운영위 개최,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6대 요구안 등을 심의.확정하고, 현대차 사측에 특별교섭을 요구함. 또한 최병승 조합원 원직복직 및 미지급 임금지급 요청 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현대차지부 단협에 의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요청함.6)

■ 한국 GM

- 5월 8일, 노사는 2012년도 임단협 교섭 관련 단체협약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3차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함. 이날 사측은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한 사측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제한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 인원을 산정하여 실무논의 하자는 제안을 함.

【사측안】 단협적용 제외자

▲팀장 및 부장 이상 ▲HR, LR & Safety, Finance, 홍보, 법무, 대외정책 ▲회사 정책 및 기밀 관련자 ▲예비군,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종사자 ▲경비원 ▲임원 등의 비서, 운전원 등

-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2년도 임금 및 단협 요구안 등을 확정함.

【주요내용】

〈임금요구안〉 ▲임금 151,696원(8.3%) 인상 ▲성과급 500%(통상임금) 지급 ▲라인수당 인상(라인별 4만~6만원) ▲잔업 및 특근수당 인상(구체적 내용은 노사실무협의 진행) 등

〈단협개정안〉 ▲노조원 사망시 직계가족 1인 6개월 내 정규직 채용 ▲정년 60세 → 61세 연장 ▲회사의 합병·양도·이전시 90일전 노조 통보, '협의' → '합의' 등

〈특별(별도) 요구안〉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근로시간 단축 ▲매년 10억 사회연대기금 출연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 5월 17일, 노사는 2012년도 임단협 교섭 상건례를 개최함. 노사간 단체협약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특별교섭은 더 이상 진행 없이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함.

6) 현대차지부 단협(35조): ① 판정서(결정서) 접수 당일부 원직복직, ② 해고기간 임금 및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 가산지급, 소송관련 경비는 판결에 의해 지급, ③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청구 하더라도 ①, ②호 이행(원직 소멸시 본인 의견 존중하여 유사직종에 복직)

한편 이날 사측은 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개시함.

【희망퇴직 개요】

▲접수기간: 5. 17~5. 31 ▲선정결과 및 퇴직절차 통보: 6. 1 ▲퇴직인사 발령일: 개인 별 잔여 연차휴가에 따라 정함 ▲희망퇴직자 처우: △퇴직금 △희망퇴직 보상패키지 (6.29 지급)* △기타(사업성과에 따른 변동급 일할계산 지급)

* 보상패키지: ▲퇴직위로금(최대 2년 연봉) ▲학자금(2년 교육비<기 학자금 수급 자녀 내 대상>) ▲차량바우처(차량구입지원: 퇴직 후 1년 내 신차 구입시 1천만 원 지원)

■ **온리원**

- 온리원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1노조), 온리원 노동조합(2노조) 등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음. 5월 7일, 1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돌입함(33명 참가). 이미 1노조는 2011년 파업 이후 올해 1월에 두 차례의 재파업에 돌입함. 지난 3월에도 한시적인 재파업에 들어갔음.
- 5월 2일, 노사는 임금교섭을 실시함. 노조는 시급 5,100원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임(4,580~4,590원 고수). 5월 8일, 1노조 지부장은 전주대 총장 면담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온리원 재선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사측에 임단협 타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함.
- 5월 9일, 노사(1노조) 교섭은 사측 교섭위원 일부가 참석하지 못해 무산됨.
- 5월 10일, 조합원 등 30여 명이 ‘전주대에서 임단협 타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주대 총장실을 점거하여 농성 중임. 5월 20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천막 설치(천막 아래 소형텐트 설치), 1노조 지부장은 텐트 내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황임.
- 5월 21일, 전주대학교 측은 사측에 파업사태 미해결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함(노조에는 총장실 점거 철회요구 공문 발송).

※ 앞서 5.10 조합원 10여 명, 전주대 총장실 점거 농성 돌입(전주대, 총장실을 다른 건물로 이전)

■ **현대자동차지부**

- 5월 8일, 노조는 조합사무실에서 2012년 임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함. 노조의 3대 핵심요구(현대기아차 공동요구안)는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중요성 등임.
- 또한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장시간노동 철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제정을 추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1사1조직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거쳐 차기 대의원대회에 ‘1사1조직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힘.

- 5월 10일, 노조는 2012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함. 5월 19일, 20일에 걸쳐 노조는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공장)의 주말특근을 거부함. 이에 사측은 주말특근 거부에 따른 손실이 7,800여 대, 약 1,580여 억 원이라고 주장함.
- 5월 17일, 개최된 노사간 불법파견 관련 특별협의를 위의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한 현대차지부 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진전 없이 종료함.
- 5월 18일, 현대자동차노조 현장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에서 주말 전 부문 특근거부 입장을 확인함. 한편 회사 본관 앞에서 폭행사태와 관련한 사측 규탄 집회가 개최됨(5월 17일 노조 지부와 사내하청 노조가 사내진입시도 과정에서 경비용역측과 물리적 충돌사태로 인해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부상을 입음. 이에 3개 공장 특근거부 결정 및 사측에 세 가지 요구함(울산공장장 공개사과책임자 처벌·사내하청노조 조합활동 보장).

■ 대구시 이곡초등학교 등 5개교 조리종사원

- 노조(2개교)는 위험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4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함(12명). 5월 4일, 노조는 각 학교장과의 공동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하여 5월 7일자로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함.

※ 파업현황: 4.30(이곡초<7명, 8시간>, 신당초<5명, 8시간>, 화원고<8명, 4시간>), 5.1(이곡초<7명>, 신당초<5명>, 화원고<8명> 각 8시간), 5.2(이곡초<7명>, 신당초<5명>, 화원고<5명> 각 8시간), 5.3(이곡초<7명>, 신당초<5명> 각 8시간), 5.4(이곡초<7명>, 신당초<5명> 각 8시간)

【주요내용】

▲ 위험수당 2013년도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 ▲ 급식인원 시교육청 권장기준 준수 노력 ▲ 병가는 유급 14일로 확대 노력 ▲ 2012.9월부터 연봉산정 일수를 275일로 확대

【노사 주요쟁점】

▲ 위험수당 5만원 신설 ▲ 명절휴가비 지급<미제시> ▲ 급식인원 적정배치<미제시>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경력 반영 등)<미제시>

- 5월 7일, 노조는 업무에 복귀함.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지난 4월, 사측은 임금 수정안을 제시함(연차수당 소송 취하 조건으로 임금 1% 인상). 그러나 노조는 수용불가 입장임. 한편 4월 23일 이후로 노조는 파업 중에 있으며 노사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7) 5월 4일 오전, 대구교육청은 노조에 위험수당에 대하여 2013년부터 반영한다고 제차 구두로 약속하고 개별합의를 각 학교와 하도록 통보함.

【쟁점사항】

- ▲ 임금 2% 인상+ 일시금 90만원(사 :수용불가) ▲인원정리(노: 현행, 사: ‘합의’를 ‘협의’로 개정) ▲ 연차 및 생리휴가(노: 현행, 사: 연차휴가 보상금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
- 5월 2일, 지점장 등 간부 16명은 내부 전산망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5월 7일 까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함.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직사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측은 친노조 성향의 지점장들이 성명을 주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삭제함.

■ 금융노조금속노조

- 5월 8일, 금융 노사는 3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함. 노조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설명이 있었으나 임금을 비롯하여 구체적 제시안 없었음.
- 5월 8일, 금속 노사는 제3차 중앙교섭을 개최하였고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 종료함.

【산별요구안 주요내용】

- ▲ 산별최저임금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1,170,514원(시급 5,600원)
- ▲ 심야노동의 철폐: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2년 중으로 시행
- ▲ 원가불공정거래 근절: ▲ 원가물가 연동제와 집단조정제 도입 ▲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정감시단 구성·운영
- ▲ 비정규직 철폐: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 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및 하청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 5월 14일, 금속 노사는 4차 중앙교섭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주요 질의응답 내용】

- ▲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비정규직 범위 설명 요구 → 현재 사업장별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정리
- ▲ 생활임금보장이 월급제를 의미하는지 → 3인 가구 생계비보전 의미임
- ▲ 부품사 교대제 지원의 주체는 완성차사 아닌가 →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장 1차 밴더의 경우도 2·3차 밴더에 대한 지원주체가 될 수 있음
- ▲ 원가물가 연동제와 집단조정제의 실행 주체는?(완성차사 아닌가) → 무응답
- ▲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한 상시업무까지 하도급 금지 대상인가? →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청소, 용역 등 간접공정의 경우도 당위성 측면에서 정규직화 대상
- 5월 22일, 노사는 5차 중앙교섭을 개최하였고, 사측안이 제시됨.

【노조요구안에 대한 <사측안>】

- ▲ 산별최저임금 월 1,170,400원(시급 5,600원) <동결(월 1,060,090원, 시급 4,670원)>
- ▲ 심야노동의 철폐(교대제변경 연내 시행)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 운영기간 연장(당초 '12년 9월 → '12년 12월)>

-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노사공동위에서 논의>
- ▲비정규직 철폐 <미제시(내부논의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 5월 9일, 조합원 50여 명은 공단 내에서 ‘이사장 퇴진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가자격 민간위탁 반대, 이사장 사퇴 및 대국민 사과, 검정 위탁 철폐, 인력 증원요구 등을 촉구함. 한편 4월 30일, 노조는 이사장 불신임 투표를 가결한 바 있음(찬성 88.9%(510명)/투표자 574명).

■ 부산MBC

-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는 5월 14일자로 업무복귀. 전 조합원은 연장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으로 전환함. 앞서 5월 11일 노사는 단체교섭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음.

【노<사> 주요쟁점】

- ▲정년(만 58세) 도래 해의 12.31 <정년 도래 월의 분기 말일(현행)> ▲직원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 <‘협의’>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피크제 유지> 등

■ 서울시버스운송조합

- 노조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7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음을 이유로 서울지장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후 5월 14일 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1.4%로 가결함(재적 16,379명 중 투표 15,482명, 찬성 14,974명, 반대 458명).

【노<사> 주요쟁점】

- ▲시급 9.5% 인상 <동결> ※조정회의시 시급 4%+3만원 인상<3.5%+4만원 인상>
- ※ 최근 3년간 임금인상내역: ▲’09년(정액 5만원<1.58%>) ▲’10년(정액 12만원<4.23%>)
- ▲’11(정액 12만원<4.06%>)

- 5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모두 거부함.

【조정안】

기준시급 8,134원의 3.5%+ 무사고수당 5만원(11만원 → 16만원) 인상

- 5월 17일, 노조는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후 5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정함.
- 5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조 위원장이 면담을 통해 비공개 교섭을 실시하여 합의타결에 이룸(임금 3.5% 인상, 무사고수당 4만원).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노동절 학교·관공서 비정규직 ‘유급휴무’ 실시 여부 집중 감시』 요구
 - 민주노총은 5월 1일 제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관공서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유급휴무’ 실시여부 집중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를 포함하여 250%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면서, “관공서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힘.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부 등에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제보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해당 기관장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법률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민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병승 건,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함.
 - 5월 2일,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현대차)이 고용의제자인 최병승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힘.
 - 또한 “현재 중노위에서 원청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다루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번 재처분 결정과 모순”되지 않게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전국 7개 공단 노동,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 민주노총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요공단 7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노동실태와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약 40%에 달했고,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3.59년으로 조사되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함. 또한 1인당 주당 평균 56.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여가활동을 못한다는 응답이 33%를 차지했다고 밝힘. 특히 “공단 노동자들은 노동실태나 생활실태 개선방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무노조 정규직 노동자의 40%,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함.

- 양대 노총, ILO 협약 위반 및 권리남용 이명박 대통령·이채필 장관 고발
 - 5월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정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동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하였고 “9명의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이름만 총연합단체인 MB노총에게 내어주고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도 ILO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함.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노동계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두 권력자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하기로 하였다는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함.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1만인 서명 돌입 기자회견
 - 5월 7일, 민주노총은 “화물건설기계·퀵서비스·간병·학습지·대리운전·보험모집 등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노동기본권조차 부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를 원칙으로 입법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결의를 모아 나가고 있다고 밝힘. 6월 국회 개원 시기를 목표로 노동 3권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 삼성반도체 노동자 55명째 산재사망에 대한 규탄 성명
 - 5월 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악성뇌종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작업환경이 유해한 반도체공장에 근무한 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악성뇌종양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벌써 55명째 죽음”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은 “이미 삼성이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은 최근 노동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아낸 산재인정 사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삼성은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이는 고용부 역학조사에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함. 이에 “삼성과 같은 살인기업의 반성과 각성, 그에 앞선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노동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한국노총,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5월 10일,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연간 2,11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많은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법·제도상 문제점과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서 제외하는 고용부의 행정해석,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011.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법정 기준노동시간 단축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주40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과 노사가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 노동시간 관련 법률의 준수에 대한 고용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쌍용자동차 희생자 관련 기자회견

- 5월 10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쌍용차 살인진압 사죄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모위원회는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살인적 경찰폭력으로 진압했으며, 쌍용차 자본은 해고노동자 복직을 뒤로 한 채 경력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2009년 살인진압과 22명의 죽음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임금노동대책 마련 최저임금연대-민주통합당 간담회

- 5월 22일, 최저임금연대와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과 현실화 방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문제점 및 민주통합당의 입장 표명,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협의 등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위원장직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 5월 22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통합당과의 통합과 정치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정 기대대가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힘. 특히 4.11 총선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정치위 등 노총의 의결기구 개최 없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등 조직으로부터 독단적 조직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 이용득 위원장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 한국노총 위원장직에 전념하겠다”고 밝힘.

◆ 정부, 국회 등 동향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부산동부지청)는 5월 16일, 사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채변제에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18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2억 3백만 원을 청산하지 않은 의류제조업자 박 아무개 씨(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함.
- 구속된 박 아무개 씨는 부산에서 199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18억 상당의 건물과 미싱기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하면서 매각대금 전액을 사채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3백만 원을 청산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함. 특히 체불근로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8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남. 한편 2012년 들어 임금체불 사업주는 8명이 구속된 상태임.

○ 무급휴직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밝힘.
- 현재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직접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없었음.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됨.

【주요내용】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함.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됨.]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 15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임. [KLI]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